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112612     |
| 의 퇴 인 | 송갑석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1.08.24. |

#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### □ 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(안 제10조의2 신설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
  - －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시험·평가기반 조성
  - － 국내외 품질 표준 및 인증제도의 개발·보급·확산
  - －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

※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을 의무를 두고 있는데, 개정안은 동 의무규정을 삭제(법 제10조·제11조·제19조제1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)하고 향후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

### 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## 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은 항공기, 우주비행체, 관련 부속기기류 및 관련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 - 현행법에서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하는 경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사업

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
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확대될 항공기 등 성능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함

- 추가재정소요액 =  $\sum_{t=2022}^{2026} [\text{확대되는 사업 비용}_t - \text{추진 중인 사업 비용}_t]$
-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‘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’ 세부사업(18억원), ‘항공부품 설비·공정개선 지원사업(R&D)’ 세부사업(20억원), ‘해외 수주연계 항공부품 산업 공정기술개발(R&D)’ 세부사업(67억원), ‘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 개발(R&D)’ 세부사업(75억원) 등 항공 분야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

-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---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경제비용추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장      | 이현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계세제분석관 | 김계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| 02-6788-46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<a href="mailto:godself@assembly.go.kr">godself@assembly.go.kr</a> |

---